환영의 글

어르신 모시기에 여념이 없는 경기도내 노인요양시설 원장님들께서 바쁘신 시간에도 경기도청 앞 궐기대회 현장에 나와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공권력의 횡포와 헌법질서 파괴현상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2012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이 현재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특성상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보건복지부가 2014년 이후 별도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제정을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은 사실상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사장법화 된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금년 초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관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여 지난 8월7일 무렵 우리나라 전 매체에 홍보자료를 뿌려 기사화함으로써 마치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부정으로 얼룩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경기도는 다시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항의에 종합감사가 아니고, 지도점검 차원의 자료제출이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관련 규칙의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사장된 규칙을 가지고 지도 점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정말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가면 되지 왜 지난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처럼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할까요? 그 자료들은 이미 지난 연초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모두 입력된 자료이니 들어가서 보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남경필 도지사의 경기도 행정에 대한 규탄, 잘못된 재무회계규칙을 통한 종합감사로 장기요양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사과와 관련자의 징계 요구, 그리고 종합감사 행위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기 위해 오늘 이 궐기대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위에 이와 같은 공권력의 횡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유권자의 힘으로, 경기도의 적폐현상을 근절해 주시고 바랍니다.

2017년 8월 5일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배상

궐기대회 순서지

제1부: 식전행사 - 재무회계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명

11:00~11:20 진행 조남웅 부총재 (장소: 경기도청 정문 앞 녹지대)

(도착하시면 본부석에서 오셔서 서명지와 음료수를 받으셔서 준비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나누어 드린 서명지에 서명하신 후 행사 진행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동료 여러분들과 음악을 들으며 담소를 나누어 주세요)

제2부: 궐기대회 본 행사

11:20~12:40 (진행:김영희 부총재/대변인)

개회사 및 내외빈 소개(사회자)

국민의례 (다같이)

궐기의 시 낭송: 이보시게 ~~~ 거기 (양지원)

환영의 인사 (강세호 총재)

격려사 (참석 단체장 및 지역 대표회장, 내외빈)

우리가 궐기대회 하는 이유 (조남웅 부총재)

민간장기요양인이 생존해야 어르신이 행복합니다.(변경애)

대통령에게 전하는 탄원서: 농협의 불공정거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김소연)

국민저항권의 발동과 선언 (배재우)

분노의 노래를 들었는가? (명희연)

공산복지부는 세상을 떠나거라 (장경숙)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나아갈 길 길 (로드맵 소개) (강세호)

남경필지사에게 전하는 선언문 낭독 (송재혁)

선언문 전달 (강세호, 조남웅, 김영희)

폐회사 (사회자)

제3부: 점심식사 및 초대가수와 함께

12:50~13:40 (진행: 변경애, 명희연, 김미숙, 송재숙)

점심식사 (준비된 도시락을 들며)

초대가수의 노래/게임과 퀴즈

-경품 - 잃어버린 물건 찾기 IOT(5개), VR CCTV(2대), 야간순찰로보트(1)
3차원 360 VR 영상을 볼 수있는 구글카드보드 (3개) 총 200백만원 상당
(경품제공 노인산업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수, 유니실버주식회사 제공)

장내정리(안내말씀) - 13:40~13:40(쓰레기, 주변 정리, 상호인사 등)

궐기대회의 시: ‘이보시게~~~ 거기’

양지원

맘이 지치고 외로울 때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을 찾는다네.

현지조사 닥치고
사유재산 강탈의 위험이 눈앞에 펼쳐질 때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을 찾는다네.

보건복지부의 횡포도
용감무쌍 갑질 건강보험공단도
이젠 겁나지 않네.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영원한 팀이되어
그들과 맞서 싸울거라네.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팀을 이뤄
좋은 세상 만들 거라네.

“이보시게~~~ 거기.”
등돌리고 서있는 자네.
함께 하세. 좋은 세상 만드는 일.

우리가 궐기대회 하는 이유

조남웅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부총재)

경기도는 금년초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종합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 8월7일 무렵 당시 회계종합감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여 실질적으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그룹 전체가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불량 집단인 것처럼 오도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래 재무회계규칙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민간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며 국가가 해야 할 노인복지업무를 국가가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파트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사회 보험료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제5류 공무원들의 어불성설입니다. 사회보험료로 지급받고 있는 80%의 장기요양급여수가는 민간기관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 댓가로 받는 것이지 무상 보조금이 아님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앞 뒤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유사한 종류의 사회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병의원, 약국, 의료용구 등은 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지 않은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유로 지난 2012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된 이후, 사회복지시설 중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복지 분야 (아동, 보육도 포함) 에서는 이의 부당함에 민간 전체가 반대함으로 인해 개정 규칙의 적용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전폭 시행되지 않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시는 실정일 것입니다.

더구나 2014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주체가 ‘비영리, 복지법인,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로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린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해 주겠다” 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비록 민간기관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는 있지만 그 법을 만들기 위해 3년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확보는 상호 이해한다‘고 쳐도 민간의 자율성과 민간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이나 표류되고 있는 것 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경기도가 감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이 이미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미 오래 전에 사장화 된 법이란 것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지켜지면 그 규칙을 지키라는 것이 잠정적 합의란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되기를 기다렸으나, 민간이 원하는 회계의 투명성, 민간의 자율성, 민간의 수익성 부분이 보완되지 않아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전면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14년 12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제정을 포함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을 의원청부 입법으로 상정하였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1년 6개월 표류가 된 바 있습니다.

제19대 국회 막바지까지 상기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는 공모하여, 반대하는 시민단체 리더를 술집에 끌고가 회유하며 법통과를 시도한 바 있고(범죄행위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전*철 의원은 마지막 법사위 통과 시 본래 22번째쯤으로 잡혀 당일 절대적인 안건 처리가 어려운 의사일정을 4번째 의안으로 조작하여 날치기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날치기 통과 시킨 법이 합당한 것입니까? 사회보험료와 국고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최고위 관료가 법통과를 반대하는 리더를 술집에 끌고 가 회유하는 것이 투명해야 할 공공인이 할 수 있는 합당하고 정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공권력을 내세운 범죄행위이며 청산되어야 할 공공적폐의 표본이 됩니다.

그러한 공공분야에서 일어나는 적폐, 부조리, 범죄부터 없애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병의원부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시키고 나서 형평성 있게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논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과 별첨의 상세한 사유로 금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의 회계 관리 종합감사를 거부하기로 전체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18,000여 기관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결정하여 전체 회원기관에 전면 거부하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사실 규명과 행후 방행 정리를 위해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신청했으니 거부당하였고, 재차 자시 면담요청에 대해서 경고도 관계자는 '남부청에서는 절대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회계 관리 검사를 할 계획이 없고 북부청에서 주관한 일이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으며 종합감사가 아니고 단순한 현장지도 차원에서 회계자료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부청에 개별적으로 기관 장 몇 사람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방문한 것을 가지고 '한노협이 방문하여 현장지도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며, 잘못해도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회의 자료를 암암리 배포하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을 방문한 그 몇 사람은 대외 공개 메시지를 통해 '한노협을 대표하여 방문했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북부청에 한노협 회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경기도청에 접수를 시킨 적이 있는가?

다음 문제는 북부청 산하 기관들은 회계관리 자료를 조사하고, 남부청 산하 기관들은 조사를 안하는가? 같은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에서 남부 남경필이 있

고 북부 남경필이 있는가? 남경필 자시의 조직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과연 재선에 성공할까 의심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인용되고 있지 않은 잘못된 재무회개규칙을 가지고 왜 회계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은 보건복지부와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최종 합의하여 재무회계규칙 문제를 결론짓기 전에는 어떤 회계 관리 관련 종합감사나 현장지도 감독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와 양주시 일부 기관장님들이 북부청과 함께 한 민원상담과 우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민원은 서로 다른 민원인데 본 단체의 민원에 대한 답변없이 왜 소수의 기관장들이 북부청을 찾아가 상당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회계 관리 종합감사와 언론배포행위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공식적인 공문에 의한 사과를 받아내고 관련자 계와 더불어 향후 다시는 노인요양시설에 재무회계 관련 감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답 받기 위해 본 궐기대회를 게최 최하게 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부총재 조남웅 배상

분노의 노래를 들었는가?

명희연

분노한 자들의 노래를 부르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함성이 들리는가?
더 이상 보건복지부에 속지 않으려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음악이라네.

우리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구호의 힘찬 리듬으로 메아리칠 때.
내일이 오면 행복하게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는
새로운 생명이 보이도다!
우리와 함께 조금 더 참으며
복지부와의 전쟁에 동참하겠는가?

장기요양위원회의 그늘에 감추어진
복지부의 야비함과 헌법질서 파괴 속에
그대가 꿈꾸던
아름다운 노인 복지 세상이 사라져 가는 지금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동지여!
우리에게 참다운 자율과
꿈에 그리던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줄
국민저항권 대열에 동참하라.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보건복지부여
분노한 자들의 노래를 부르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함성이 들리는가?
그 함성이 모아져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음에
귀를 기울이라.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촛불 저항권이 있음을 아는가?
시간과 때가 이르면,
또 다른 저항권이 태어나
그대 보건복지부의 헌법질서 파괴를

심판하는 날이 오리니,

현지조사가 무서워 댓글하나 달지 못하는
민간 장기요양인, 동지들이여.
다시는 복지부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분노의 음악을 들으라.
그리고 함께 깨어 일어나 외치라.
'나는 재무회계 규칙이 싫다고!

우리 모든 민간장기요양인의
심장 뛰는 소리만이라도 하나가 되어
구호의 박동과 공진을 이룰 때
보건복지부의 성은 무너지리니,

지방 분권화가 복지부를 무너뜨리고,
사회서비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자리를
송두리째 뺏어 가리니,
내일이 오면 피어나려는 꽃잎을 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보이도다!

국민저항권의 깃발이 전진하도록
그대의 모든 것을 바치겠는가?
누군가는 스러지고 누군가는 살아남을지니
일어서서 당신의 마지막 운명을 마주하겠는가?
내 귀가 들리지 않고
내 팔다리가 굳어가더라도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 마지막 할일은
재무회계규칙을 폐기하는 일이라네!

분노한 자들의 노래를 부르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함성이 들리는가?
다시는 복지부에 속지 않으려는
착한 민중들의 음악이라네!

우리 모든 민간장기요양인의
심장 뛰는 소리만이라도 하나가 되어
구호의 박동과 공진을 이룰 때
보건복지부의 성은 무너지리니,
이제 모두 깨어 일어나
국민 저항권에 동참하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생존해야 어르신들이 행복합니다.

변경애

①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언론에 의해 왜곡 되어진 민간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실상을 바로 전달해야합니다.

※현재 생존의 문제까지로 귀결되는 민간장기요양기관 현장의 3대 핵심 이슈의 뿌리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으려는 영리-비영리 정책기저 변환으로부터 야기된 대국민사기극이 존재함을 바로 알려야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하 대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와 복지법인은 공익 복지를 담당하고, 민간기관은 노인산업으로서의 민간영역을 담당하는 이원화 정책이 펼쳐져야 합니다.

②3대 핵심이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요양기관 전부 망해서 문을 닫습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익기관에게 적용해야할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강제 적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소상공인 유형인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산당식 고시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③장기요양보험 환경변화의 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10년째,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 이상 달성의 성과, 그곳에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습니다.

※잘못된 출발, 잘못된 만남, 설계는 비영리로 되어있으나, 조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리사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비영리화 시도로 게임의 규칙 변경, 보건복지부는 중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속되는 민간의 반발과 갈등, 절대 민간이 양보할 수 없는 결사생존을 위한 배수진입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급여수가 인상 시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물가상승률 3%(추정)을 반영한 급여수가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을 즉각 폐기하고 공익 장기요양사업과 민간 장기요양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이원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익 장기요양사업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게 하고, 민간 장기요양사업은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적정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는 적용되지 않도록 즉각 폐기 되어야 합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생존해야 어르신이 행복합니다. 상기 3가지 요청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대한민국 전체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은 무기한 휴업 및 폐업,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반납, 평가 거부, 현지조사 거부, 보건복지부 장관 탄핵 등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국민저항권 또는 혁명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하는 달성될 때까지 결사 투쟁할 것입니다.

어용 법정단체들의 자문, 자유재량의 도를 뛰어넘는 장기요양위원회의 불평등 운영구조는 국민저항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산복지부는 세상을 떠나거라!

장경숙

왜 착한 소시민들이 힘이 계속되는 궐기대회에 참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착한 소시민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른 쥐가 고양이를 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생존의 문제를 걸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도를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 2)민간장기요양 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적용 폐지 관련, 3)공산당식 인건비 비율의 지정 고시 폐기입니다.

출발이 다른 것 같지 보이지만 실상 이 세 가지 이슈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점철된 '영리-비영리화 논쟁' 입니다.

①당초 비영리 사업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장기요양사업을 영리사업으로 출발한 복지부,
②어느 정도 인프라가 확충되었다고 판단한 복지부의 비영리화 전환 시도와 반발/갈등,
②모든 제도의 초점을 비영리화로 귀결시키며, 수익금 0의 기저로 만들기 위한 음모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2008년 이후 최저임금 98%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22% 인상(공생은 9% 인상)에 그친 사실입니다. 수익 0%가 확인될 때까지 인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발상입니다.

민간기관이 재무상태 상 수익이 얼마 남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헌법에도 위배되는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강요해 온 것 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노동조합 단체의 강요와 잠정 유권자 수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정치권과 보건복지부가 굴복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처우개선비 지급과 종사자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횡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인건비 적정비율을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종사자는 안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적폐현상은 우리나라 공공의 사회악에 가깝게 변질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순진해서 울지 않고 대들지 않아서 그들은 여러분들이 대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협 이라는 어용단체와 공산국가에서도 없는 장기요양위원회, 광고를 미끼로 언론을 앞세워 그들의 비정상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장기요양인이라는 막강한 시민의 힘'으로 비정상 노인복지정책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영리-비영리 논쟁을 종식 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체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하나가 되어 한 방향의, 한 목소리, 그리고 큰 힘을 만들 때 그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뭉쳐 주십시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모두 힘을 합해 잘못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항거해 주십시오. 공권력의 적폐를 더 이상 이 땅위에서 사라지도록 세상이 떠나가도록 외쳐주십시오. '공산복지부는 세상을 떠나거라' 고 외쳐주십시오.

민간장기요양시장,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때이다.
깨어 일어나라, 민간장기요양인이여!

배재우

친애하는 민간장기요양인 여러분,

민간장기요양인들의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저항권'이라는 단어가 튀어 나왔습니다. 참 생소한 단어이지요?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현존 문제를 해결해 줄 가장 적합한 말이기에 오늘은 먼저 국민저항권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펼치는 '민간장기요양인, 국민저항권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의 횡포는 국민저항권으로 대응한다.'

저항권(抵抗權)이라 함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입헌 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 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국민 또는 그 집단이 헌법질서를 유지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보장수단입니다.

즉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입니다.

저항권 이론은 고대 기독교 사상에서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신의(神意)에 반하는 세속 권력의 지배에 대하여 통치를 당하는 피치자의 저항권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게르만관습법에서도 통치자가 국

민의 동의에 반하는 지배를 한다고 인정될 때 인민은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항권은 그 자체가 자연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실정법으로 규정하느냐의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헌법이나 권리장전에서는 저항권을 실정법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 삽입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저항권의 명시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저항권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고, 입헌적 질서가 독재 권력에 의하여 유린되는 상황에서 헌법수호의 최종적 책무를 지는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의 질서와 가치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으로 인한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이 자행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

①헌법 제1조 파괴 행위

보건복지부는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무시하는 공산주의적 복지행정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한사람인 민간장기요양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권력이 민간장기요양인을 포함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②헌법 제23조 파괴 행위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대상자인 수급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같은 국민인 민간장기요양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큰 뜻의 공공복리, 즉 국방, 국민경제 사안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 있을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하고 있다.

③헌법 제119조 파괴 행위

보건복지부는 재무회계규칙의 강제 적용을 통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급여수가의 조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인 최저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기관 운영의 안정을 해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산을 투입한 민간기관 임에도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 등 소득의 적정한 분배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질서의 중대한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④헌법 제126조 파괴 행위

헌법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긴절한 치명적 중대사항이 아닌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사영기업으로 출발한 민간장기요양기업을 비영리화 한 후,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해야할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에게 강제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경영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권력의 횡포에 따른 민간장기요양인들의 국민 저항권 대응은 합법 적이며 당연한 것이다.

①국민 저항권의 정의에서 밝힌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인하여 상기와 같이 헌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음으로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②국민 저항권의 행사는 경기도의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의 재무회계관리 종합감사의 절대적 거부로부터 출발한다.
③국민의 한사람인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전체 의견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2017년 8월4일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제정을 민의를 반영한 아무런 수정 보완 없이 통과시키는 경우, 휴업/폐업,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 평가거부, 현지조사 거부 등 합법적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④지난 9년 동안 이루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권력 횡포를 신 문재인 정부에서 근절해야할 적폐로 보고 대한민국 모든 민간장기요양인들이 합심해서 국민저항권 행사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가칭)장기요양국민저항권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의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민간장기요양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합니다. 적극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행동 방향 안내

슬로건

'국민이 우선인 나라다운 나라, 장기요양인이 우선인 장기요양행정 '

1. 궐기대회 개최의건

가. 9월5일 경기도청 앞 궐기대회

9월5일 경기도청 앞녹지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입소정원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경기도 재무회계관리 종합감사 중단 요청'궐기대회가 열립니다.

나. 9월12일 4대법정단체 통합궐기대회

9월12일 4대 법정단체 통합궐기대회가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8월11일, 8월18일 우리 궐기대회 장소) 에서 열립니다.

법정단체 통합 궐기대회지만 8월22일 한노협/중앙회 궐기대회 처럼 8월11일, 8월18일, 8월22일 참석한 모든 장기요양인이 함께 참가합니다.

다. 홍길동식 차량 확성기 1인시위 추진단 결성

9월4일 월요일 부터 아침 8:30~9:30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차량 확성기 1인시위를 하고, 오전11:30~오후 1:00까지 경기도청 차량시위, 오후 5:30~6:30분까지 한시간 동안 청와대 부근에서 차량 확성기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라. 수차례 추가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주최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재무회계규칙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입법 예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전재연 샘플,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샘플 활용) 2만 장 이상 보내기
- 한부는 팩스 0303-3444-0647로 보내거나 메시지

- (시설)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입법예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샘플 작성중에 있습니다.)

3. 국민저항권 추진본부

- 활동계획 수립
- 변호인단 구성을 위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 제안요청서 발송
- 제안 설명 및 변호인단 구성
- 추진본부 결성식 및 참여 캠페인 실시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장기요양 행정행위 거부활동 개시 (평가거부, 현지조사 거부, 휴폐업,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 행정지도 거부)
- 복지부와 공단이 위반시 행정처분 을 유도하여 즉각 행정소송/위헌소송 제기
- 변호인단은 국민저항권 집행을 위한 신청인 보호 활동 지원 (행정구제 활동)
- 지속되는 궐기대회 및 촛불 문화제 실시

4. 언론홍보활동 계속

- 100라이브 방송단 방송 프로그램 정례화
- 조중동 주요 매체 및 공영방송을 통한 홍보 실시
- 인터넷신문과 sns 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 공권력 횡포 중지 미디어 공고

5. 법안 개정 캠페인

-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의 재무회계규칙 적용 폐기를 담은 법안 입법발의 지원 (공권력 횡포를 통한 헌법질서 파괴행위 금지 특별법안 제정 포함)
- 노인복지 업무의 분권화로 보건복지부 노인복지행정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업무 역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하는 분권화 추진 지원 (일본식 제도)

6. '장기요양 해방기금 마련 공동회 결성'

- 이 일 추진을 위한 기금 마련 공동회가 결성되어 자금 지원을 합니다.

7.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사단법인화 추진

-(가칭)공공정책백만시민감시단 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깊게 연계되어 있는 부처에 사단법인 등록을 신청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공권력의 횡포로 인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근절하게 될 것입니다.

8. 농협,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사회서비스 공단 등 국가/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반대 캠페인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무소불위의 공권력의 횡포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적폐현상으로부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가가 해야 할 몸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불철주야 힘쓰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입니다.

우리 일백만 민간장기요양인 일동은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주용 내용을 담아 대통령님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하나, 막강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협, 새마을 금고, KB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이 생계형 민생보호사업인 재가장기요양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십시오.

하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초기 자기 자본을 들여 수익사업으로 참여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보건복지부가 비영리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비영리 공익 사회복지법인 등에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강제 적용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활동을 즉각 금지시켜 주십시오.

하나,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횡포로 인한 헌법질서 파괴 현상에 대해 일백만 민간장기요양인들의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제도를 바로 바꾸려는 범국민 캠페인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9년이 경과하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명실상부한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한 대국민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놀라운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뒤안길에는 장기요양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숨겨진 공로가 지대함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공공화 편향 사회복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참여하여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서비스 질 이 악화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공공화 장기요양기관의 확대와 소규모 시설의 퇴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지난 5년간의 경과를 지켜볼 때 제도 도입 초기와는 달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법규준수 의식도 고양되고 오히려 민간 기관들이 기존 공익 장기요양기관들보다 더욱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 측면에서도 오히려 공익 사회복지법인들이 훨씬 관습적인 재무회계 부정이 만연함을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없는 운영체제하에서 밖으로 들어나지 않는 조직적인 부당행위를 하고도 관습적인 노련한 은폐행위를 통해서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도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행위들도 만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는 실질적으로 모순된 제도의 부산물 성격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장기요양기관 부당행위의 90% 이상은 지킬 수 없는 포악한 인력운영제도나 수시로 변경되는 장기요양보험법과 규정,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획일적 처벌을 하고 있는 관행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실에 근거 없이 수많은 장기요양종사자들 중에서 유달리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조하면서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요양보호사에게 제대로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 등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공익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기관이 준수해야 할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강제 적용하는 등 기본적인 헌법질서가 파괴됨으로 인하여 민간 기

관들은 맹렬히 반대함으로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이 표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다시 한 번 살펴주시어 선량하게 살고 있는 한 부류의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소상공인보다 열악한 생계형 사업인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에 공익적 법인인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KB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고객이 맡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사업에 참여를 선포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이제 국가를 믿고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한 모든 소규모 장기요양기관들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규형감각을 상시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음도 직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말씀드린 그릇된 정보로 인하여 민간기관에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강제 적용 시키는 일이나 대규모 금융기관이 생계형 재가장기요양사업에 뛰어드는 일, 사회서비스 공단 설림 등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특히 장기요양정책을 심의한 장기요양위원회의 이용자 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농협의 재가장기요양사업 진출 시도는 명백한 장기요양위위원회의 위원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전 내부정보를 자신들의 사업에 활용하는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무질서와 혼란이 지난 정부에 이루어져 그 정도가 심할 전도로 장기요양시장에 만연하고 있는 적폐현상으로 '나라다운 나라 건설'에 앞장서시는 대통령님께서 착한 소시민의 민생 해결의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우리 민간장기요양인들도 모두 힘을 합하여 스스로 정화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부당 행위자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어르신을 충심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곡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적폐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탄생시킨 촛불 저항권의 힘을 빌려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행정에 대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그러한 불상사가 이 땅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17년 9월 5일

일백만 민간장기요양인을 대표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소속 기관장들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회원들이 연대서명으로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일백만장기요양인 연대 서명부, 끝.

참고: 전국의 민간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은 “재무회계규칙폐기“ + ”농협 등 금융기관 참여반대“+”국민저항권 동의“에 찬성하는 연대서명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백만 장기요양인 연대 서명부

“재무회계규칙폐기“ + ”농협 등 금융기관 참여반대“+”국민저항권 동의“

이름	소속기관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일백만 장기요양인 연대 서명부

“재무회계규칙폐기“ + ”농협 등 금융기관 참여반대“+”국민저항권 동의“

이름	소속기관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일백만 장기요양인 연대 서명부

“재무회계규칙폐기“ + ”농협 등 금융기관 참여반대“+”국민저항권 동의“

이름	소속기관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일백만 장기요양인 연대 서명부

“재무회계규칙폐기“ + ”농협 등 금융기관 참여반대“+”국민저항권 동의“

이름	소속기관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선 언 문

우리 경기도내 30만 민간장기요양인 일동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재무회계 규칙 의무화, 강제 적용 시도와 관련된 경기도의 잘못된 경기도의 종합감사 시도 등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하나,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적용 음모와 관련된 제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하라 하라.

하나, 기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운영주체의 특성이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획일적으로 문제가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작업이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기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이 전폭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직시하고, 경기도는 적법하지 않은 당해 법률을 근간으로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언론에 유출시켜 민간장기요양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을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가 공식 문서에 의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

하나, 지금 현재 일부지역 시군구를 중심으로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관리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잘못된 규칙을 할용하여 종합감사나 현장 행정지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당 시민감시단의 민원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응답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요양 정책제도 개선에 대해 소통이 없이 부적절한 규칙을 활용하여 행정지도나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낙후된 5류 공무원 집단인 경기도의 모습이다. 뒤떨어진 남경필 지사의 도민 행정체제를 즉각 보완 개선하라.

상기와 같은 경기도내 30만 장기요양인 들의 결의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을 시 장기요양인 일동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경기도 장기요양행정에 대해 전면 거부할 것임을 고지하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향후 전개될 지방자치선거에서 경기도내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임을 알린다.

2017년 9월5일

경기도 내 민간장기요양인 일동

*본 선언문에 대한 응답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전화 031-718-5811, 이메일 silverwill@naverf.com, 팩스 0303-3444-0647)로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486호와 제2017-0490호
재무·회계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모두 반대

나. 반대사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작은 고 노무현대통령의 수많은 업적 중 단연 최고의 업적으로써 8년이 지난 2016년 고객만족도가 처음으로 90%를 넘었다.

지난 9년 동안 비영리법인요양원과 영리민간요양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심하여 창출한 노인복지 영역의 위대한 업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민간 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을 교묘하게 위헌적인 법안을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위장해 오다가 마침내 숨겨 두었던 마각을 이번 입법예고에서 드러냄으로써 우리 민간 요양서비스 공급자 일동은 전면적으로 입법 예고(안)을 거부함은 물론 차제에 원초적으로 아래 열거한 국민기본권을 회복하려고 한다.

1. 헌법 1조: 국민주권
2. 헌법 23조: 사유재산권
3. 헌법 119조: 사기업 경영자율권
4. 헌법 126조: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금지

국민기본권인 국민저항권의 발동으로 촛불혁명을 통해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정부의 노인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빛나는 업적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 적폐 즉 영리 추구 민간요양서비스제공업자를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부당한 절차를 통해 마치 적법한 절차를 통한 것처럼 위장하여 비영리기관으로 만들고자 한 일련의 입법독재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적 복지정책에 의한 적폐를 일소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정부의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보험법을 통한 대한민국 노인 행복추구의 진정성과 위대한 철학을 간교한 입법테러 및 행정 강제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창업 독려에 힘입어 민간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로서 요양산업에 투신한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강탈당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억제당한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을 계승한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적폐를 일소해 주며, 새로운 문제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철이 재현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금번 입법예고 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안을 반드시 폐기 해줄 것을 장기요양백만인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천명한다.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핵심 문제점

①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② 잉여금의 전출이 모든 법정적립금을 충당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실효성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한 경우만 전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③기관 설치 전 금융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 불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④기존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재무회계규칙의 처벌규정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등 유사한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 재무회계규칙을 소상공인 보다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여 세계적인 탈규제 방향을 역행하고 있다. ⑤ 장기요양기관 대표의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기업의 기본 회계 관리의 원칙과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도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으로 돌아간 점 등으로 당해 규칙의 입법화 및 의무화 강제 적용을 전면 거부한다.

우리의 반대 의사에도 규칙(안) 통과를 강행 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휴·폐업, 지정서 반납, 평가 거부, 현지조사 거부, 현장지도 거부 등 국민의 한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저항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서명)
주소:
전화번호:

※본 의견서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 후 팩스 0303-3444-0647 또는 지역대표가 원본을 수집하여 2017년 9월1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3-2, 장기요양인의 둥지, 지하1층 제`02호-103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앞으로 보내주시면 향후 법적 쟁송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1부를 복사한 후 모아서 주요 언론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제출 할 것입니다. 가급적 양면 인쇄 1장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